

## 신정아 사건이 한국 언론계에 남긴 것

임도경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한때 잘나가던 한국미술계의 신진세력이었던 신정아(39)씨의 몰락과정은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신씨 사건의 본질은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학력 위조 사건은 물론, 권력유착형 비리 문제, 그리고 취재경쟁에 빠들어진 언론의 자화상까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한국 언론의 취재보도 준칙과 관련해 '신정아 사건'이라는 단어는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단어로 남을 것 같다.

신씨 사건의 핵심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학력 위조(공무집행 방해) 문제와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등)였다. 2007년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 문제로 신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끈 사건은 폭로저널리즘의 진상을 그대로 보여준 누드사진 보도 소송이었다.

신씨는 지난 1월,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3년여 간에 걸친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서 선고이틀 전 양측이 합의한 조정조건은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률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조정조건에 따라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양측이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 법정에서 진행된 그간의 협상내막을 알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최소한 언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재 대상에게 거액 배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국 언론의 보도규칙과 취재윤리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한창 문제가 시끄럽던 2007년 9월 13일자 문화

일보는 1면에 ‘신정아씨누드사진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신씨의 얼굴을 한 알몸 여성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여성이 서재앞에서 반듯이 서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이런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고 출처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 사진의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처리를 했지만 그 이상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시각마저 잠재우지는 못했다. 타이틀 부제까지 ‘고위층에 성로비 의혹관심’이라는 도발적인 내용이 달려있었다. 기사내용은 더했다. 마치법의학자가 부검 후 검시기록을 쓴 듯 “몸에 내의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의를 벗은 지 한 참 후에 찍은 사진으로, 작풍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징표같은 느낌이난다”고 쓰여 있었다.

문화일보의 보도 이후 각 신문은 마치 특종이라도 놓친 듯 앞다퉀 신씨의 성로비 의혹을 찾아내기 위한 기사로 경쟁했다. 이런 경쟁에는 보수와 진보 언론사간의 차이도 없었다. 경향신문은 9월 13일자 기사에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진위가 더 의심스럽다’는 원색적인 공격을 숨기지 않았고, ‘신정아씨누드사진누가왜?’라는 집요성마저 보였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신정아 스캔들’을 썼고, 매일경제는 ‘신정아 도깨비 행적... 단정함 뒤엔 누드사진’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누드사진 진짜라면 단순사생활로 치부하긴 불분명’이라며 신씨의 건전하지 못한 사생활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흘린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의 이 메일이 외압에 필요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보다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데 이용되면서 스캔들의 증거로 등장했던 시점이었다. 누드사진까지 드러나자 언론은 ‘꽃뱀’이라는 용어까지 버젓이 쓰고 있었다.

이렇게 확대된 신씨의 누드사진 파문에 대중들은 남의 침실을 엿보는 관음증적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만을 보내진 않았다. 이 보도로 ‘언론의 기능과 책무’라는 화두가 여론의 중심부에 등장했고, 원색적인 황색저널리

**“신씨의 누드사진 보도로 인해 ‘언론의 기능과 책무’라는 화두가 여론의 중심부에 등장했고, 원색적인 황색저널리즘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즘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사건의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누드사진을 공개해 한여자의 생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한 인터넷 블로거는 이 사건에 대해 ‘인격적 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거부반응이 거세지자 언론계 일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감중인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는 문화일보였지만, 어느 언론도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앞다퉀 문화일보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실으면서 선정성 경쟁을 하던 그들이 아니었는가.

2008년 12월 17일 민사합의 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사진이 신씨의 주장대로 합성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와 무관하게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신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합성사진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속의 포즈대로 자신의 알몸을 촬영해 전문가들에게 대조를 의뢰하는 과정까지 겪었지만 감정결과 조차 불확실하게 결론이 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알몸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는 신씨가 정·관계나 종교·문화계 고위층 및 원로 등을 상대로 문어발식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한 것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로비 의혹을 다룬 기사로 인해 신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신문면에 “신 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신고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7일간 게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 씨에게 하루에 100만원씩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도록 덧붙였다. 이런 보상금은 국내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액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문화일보는 이 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거론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던 신 씨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량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면 사진까지 실은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씨가 주장하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는 사실 명백했다. 현대는 이미지 시대라 초상권에 대한 보호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법적 보장이다.

2000년 9월 주식시장 폭락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한 중년 부부를 객장에서 촬영했던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게재한 일은 유명하다. 이 부부는 당시 만기 예수금을 찾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고, 더군다나 사진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명수배자가 체포되는 장면같이 초상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대로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면 초상권 침해도 당연히 성립된다.

“신 씨 사건처럼 취재경쟁이 뜨거운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기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취재원의 인격권이다. 특히 신 씨처럼 특정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공중의 관심을 받는 취약한 입장이 된 취재원의 인격권은 쉽게 무시하기 쉽다. 그런 점이 늘 보도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유명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상당 부분 제외된다. 유명인이라 해도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와 특정 사건으로 유명해진 상대적 유명인은 개인의 익명성 이익을 따지는 기준이 다르다. 신 씨는 후자의 경우인데, 본인의 동의 없이 누드 사진을 게재하는 수준의 보도는 진위 여부를 떠나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진이 신 씨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점을 언론사의 실책으로 간주했다.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사진이 합성이라는 전제에서도 문화일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 씨 사건처럼 취재경쟁이 뜨거운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기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취재원의 인격권이다. 특히 신 씨처럼 특정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공중의 관심을 받는 취약한 입장이 된 취재원의 인격권은 쉽게 무시하기 쉽다. 그런 점이 늘 보도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취재원의 인격권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등이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런 법의 적용이 신 씨의 1심 판결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307조 1항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2항에서는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 1항에 따르면, 신 씨 누드사진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언론사는 명예훼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정에 묶여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사를 못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유추 적용한다. 이는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양자를 균형 잡게 하는 기능을 해왔다.

따라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내용이 원칙적으로 실제사실에 부합해야 하며(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하다면 내용상 사소한 부분의 착오나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의 기술적 수식으로 인한 변형은 용인), 둘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근거를 두고 신 씨 누드사진 파동을 다시 분석해보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드러난다.

첫째, 그 사진이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사건혹은 미술관 공금 횡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위조 사건 하나만으로도 신 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충분한 지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변양균 전 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언론이 과

도하게 집중해 취재경쟁을 벌임으로써 실제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다뤄졌어야 할 학력 위조 사건은 사건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버렸다.

기억할지 모르겠다. 신 씨와 마찬가지로 학력 위조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가수 타블로의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 방송사에서 직접 미국 대학을 방문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 방송을 내보내는 심층 취재 과정을 밟았던 것을. 신 씨 사건도 그런 확인 과정을 밟는데 언론이 보다 취재력을 집중해 세계 일류라고 자부하는 예일 대학의 학력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되는 과정을 밝혀주는 것이 훨씬 더 '공기(公器)'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그 누드 사진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신 씨 사건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쟁터로 변했고, 사건의 불똥은 중심부를 빗겨나 외곽으로 번져나갔다. 학력을 위조한 명사들이 차례대로 사냥되는 장면이 연출됐으니까 말이다. 신 씨는 죄값을 치르고 출소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가 어떤 과정으로 위조되어 미국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날아올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지금도 이땅에 디에션가 되풀이 될 수도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문화일보를 비롯한 타 언론사들은 누드사진을 보도하려면 좀 더 그 파장을 고려해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문화일보의 배상 근거로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진위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도 밟지 않는데 따른 실책을 지적했다. 최소한 사진을 찍은 작가와 사전에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고, 또 사진 공개 이후 심각한 불명예가 예상되는 당사자인 신 씨 자신에게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조사의 정도'는 정황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누드사진이 보도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8년 2월 발행된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 창간호에는 이 사진을 촬영한 작가 황규태(70) 씨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횡령 사건으로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황 씨는 문제의 사진과 관련, “사석에서 몇 차례 신 씨에게 제의해 신 씨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며 “사진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신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추어 여성 사진작가인 A씨가 5년 전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사진을 뒤져 챙겨뒀던 것으로 A씨는 훗날 누드사진으로 신정아를 따로 만나 괴롭히기도 했다”면서 작가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아트레이드>는 황 씨 인터뷰 기사에 대해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출신인 조우석 씨가 2007년 9월부터 보도 당시까지 황 씨와 주고받은 20여 차례의 국제전화와 편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황 씨의 태도는 아리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신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합성 사진의 증거로 미국 이민국에 수감중인 황 씨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황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필로 보낸 편지에서 “문화일보에 실린 신정아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오래 전 전시를 위해서 합성작업 해뒀던 것입니다”라며 “나의 보관 허술로 이런 일이 생기고, 신정아 씨에게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준 것 사과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 자술서 제출 이후 2년여 만에 양측이 조정 에 응해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황 씨의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이런 확인 과정조차 이 사진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문화일보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또 당사자인 신 씨도 사진이 보도된 직후인 2007년 8월 <시사인> 창간호 인터뷰에서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문화일보 역시 위위 두 매체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당사자들인 신 씨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바늘귀에 실을 꿰어 넣는 인내심은 특종을 완성하는 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언론은 순간적 휘발성이 강한 아이템일수록 더 차분하게 다루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나 황 씨와 직접 접촉한 후 보도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필자 역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단독 사진을 입수했을 경우, 그 치열한 취재 경쟁 속에서 차분한 과정을 밟아가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취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바늘귀에 실을 꿰어 넣는 인내심은 특종을 완성하는 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언론은 순간적 휘발성이 강한 아이템일수록 더 차분하게 다루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일보가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일단 보도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설사 보도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 시점을 조절하면서 다른 각도의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랬다면, 반향은 달랐을 것이다.

신정아 사건으로 언론계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취재원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 해온 취재관행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결과 또한 언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